



의안번호	제17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차경선 의원 외 4명
발의연월일	2019. 3. 6.

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7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6.

대표발의자 : 차경선

공동발의자 : 박승용, 조용훈,
김만중, 조배식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장애인공무원 교육·훈련, 지원신청, 지원내용(안 제5조~제7조)
- 라.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(안 제8조)
- 마.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법(안 제9조)
- 바.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10조)
- 사.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(안 제11조)
- 아. 시행규칙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지방공무원법 제7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조례안 : 별첨
 - 2) 입법예고 : 2019. 3. 7. ~ 3. 12.(5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공무원”이란 논산시 공무원 중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공무원”이란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근로지원인”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말한다.
4.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·정신적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,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·훈련)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·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,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·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신청)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내용)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

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
3.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4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신청방법,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적용 배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
2.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
3.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

제9조(지원방법) 시장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

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3.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2.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
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전문기관 지정취소 등)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

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3.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안자	논산시의회 의원	차경선 의원 외 4명

■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■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(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 5. 18.>